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286

발의연월일: 2022. 1. 6.

발 의 자:이용우·김경만·김상희

김승원 · 김주영 · 소병철

이병훈 • 이수진 • 정필모

진성준 · 홍기원 · 홍정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을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 전문대학 등), 「평생교육법」에 따른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자, 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것으로학점인정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전공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며, 학생의 입학자격·교 육과정 및 교원의 자격 등에 있어서 전문대학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전공대학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를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에 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에서 일정과정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를 추가함으로써 부당하게 응시자격을 제한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5조).

법률 제 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제21조"를 "제31조제4항, 제32조"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을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공대학·사내대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회계사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공인회계사시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5條(公認會計士試驗) ①・②	第5條(公認會計士試驗)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③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야 한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	1
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	
교육법」 <u>제21조</u> 또는 <u>제22</u>	<u>제31</u> 조제4항, 제 <u>32</u>
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조제33조제3항에 따른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	전공대학·사내대학
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	
다)에서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